

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 정 : 2025. 7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취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개발하며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 및 취·창업상담, 현장실습 및 인턴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생활 및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로 및 취·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
2. 진로 및 취·창업 관련 상담 지원
3. 진로 및 취·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4. 진로 및 취·창업 지도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검사
5. 취업 통계 및 자료 관리
6. 현장실습 지원 및 인턴 운영
7. 고시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
8.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

제4조(조직 및 구성) 센터의 조직과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장의 임명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5조에 따른다.
2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3. 센터에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·창업 상담 등을 위해 자문위원 및 전문 컨설턴트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,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
3.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심의 안전 발생 시
2. 재적위원 1/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3. 센터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발생 시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8조(자문위원) ①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